

대전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가단1316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정진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10.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0. 10. 30. 접수 제177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C가 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해위에 해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20. 10. 30. 피고로부터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이 설정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0. 10. 30. 접수 제177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접수 제17785호로 기존 근저당권자 D의 주소변경 표시변경등기를, 같은 날 접수 제17786호로 같은 날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같은 날 접수 제17787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을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C가 피고 명의로 취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금산군 E, F,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주소] 충남 금산군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판매 및 영업시설 1, 2층 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J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84.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충남 금산군 E 대 1,946㎡

2. 충남 금산군 F 대 214㎡

3. 충남 금산군 G 대 19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356분의 20.4131. 끝.

